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6월 16일

당하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최 *정	최 *정 1957-02-13	인천광역시 서구 한들2로 (백석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6-16